

## 표준모델 준불연심재 제품 품질보증계약서

0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표준모델에 사용되는 준불연EPS심재(이하 심재라한다)를 판매함에 있어, 심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한다.

- 아 래 -

### 제 1 조 : 목 적

“갑”과 “을”은 표준모델에 사용되는 심재를 시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시장이 요구하는 규격(법규 및 KS 규격 포함)에 맞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샌드위치패널 심재 시장의 품질 보증 체계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의 화재안전 정립에 기여함에 있다.

### 제 2 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 “갑”과 “을”이 계약 해지를 위한 서면 통지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 제 3 조 : 품질 보증

- ① “갑”이 생산, 판매하는 표준모델에 사용되는 준불연EPS 심재의 품질은 “을” 의해 제시된 규격에 따라야한다
- ② “갑”은 상기 ①항에 언급된 심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에 사용되는 심재의 품질 관리 일지를 기록, 유지, 관리해야 하며, “을”이 요구할 경우 “갑”은 공개해야 한다. 단, “갑”의 기존 품질 관리 대장이 상기 사항을 만족할 경우, “갑”, “을”은 상호 합의에 따라 기존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갑”은 표준모델에 사용되는 심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 의해 성형 품질 검사를 위한 품질 확인 및 시료의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갑”은 첨부된 품질 검사 동의서에 동의한다.
- ④ “갑”은 표준모델 심재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금 1억원 또는 이행보증증권 1억원에 가입하여 “을”에게 제출하며, [별표2]에 따라 “갑”이 일시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담보한 예치금 현금 1억원을 조합에 귀속시키거나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한다.

**제 4 조 : 성형물 시료 채취 장소 및 주기**

- ① “갑”은 제품의 품질의 보증을 위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하기의 장소에서의 시료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
  - 가. “갑”의 표준모델 심재 가공 생산 라인,
  - 나. “갑”의 표준모델 심재 보관 창고 및 야적 장소,
  - 다. “갑”의 표준모델 심재 수요처로 운반될 차량의 상차 시,
  - 라. ”갑”의 심재 납품처 및 공사 현장.
- ② “을”과 “을”의 대리인은 “갑”의 표준모델 심재 품질의 보증이행 확인을 위하여 월 2회 이상 상기 지명된 장소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고, 제품 규격기준 위반 시에는 제 5조에 따라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조 : 품질 보증 위반**

“갑”이 표준모델에 사용되는 심재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최종 고객에게 공급하여 불량품이 유통 될 경우, “을”은 표준모델 심재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별표2]에 따라 표준모델 심재의 공급을 중단시킨다. 심재의 공급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공급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공급중단 사유에 따른 신청 제한 기간은 [별표2]에 따른다.

- ① “갑”은 어떤 경우에도 “을”과의 별도, 사전협의 없이 제 3자에게 위탁가공 또는 임가공을 할 수 없다.

2023년 월 일

“갑”

“을”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374번길 9-21

000000000000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대표이사 0000

조합장 최국현

[별표 1]

## 심재 제품 품질검사 동의서

00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을'이라 한다)은 양자간 샌드위치패널 표준모델 준불연 EPS 심재의 품질 보증하기 위하여, 상호 체결된 제품품질보증계약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갑'은 '을'이 정한 품질검사 절차에 따른 품질검사를 동의하며, 품질검사절차에 불응할 경우 '을'이 정한 규정과 제재조치에 따른다.

2023년 월 일

'갑'

0000000000000000

0000000

대표이사 0 0 0

'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74번길9-21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조합장 최 국 현

◎ 심재 제품의 일시정지 및 취소 사유

1. 표준모델 사용인증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2. 조합이 이 규정에 따른 심재의 품질검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방해, 거부, 위력 등을 행사하여 심재의 품질검사절차 및 품질관리의 진행일정 및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하는 경우
3.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분담금 납부를 1년 이상 지체하는 경우

[별표 2]

심재 제품의 공급중단, 일시정지, 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

행 위	관련 규정	1차 제재 조치 (기한)	2차 제재 조치 (기한)	3차 제재 조치 이상	취소후 신청제한 기간
심재의 품질관리 개선 사항등이 확인된 경우 : 개선요청, 일시정지, 인정취소					
1. 이 규정에 따른 사용인증과 관련하여 심재의 품질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방해, 거부, 위력 등을 행하여 사용인증 및 품질관리의 진척을 미행일정 및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하거나, 준불연심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한 모든 준불연심재제품의 품질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성실원칙에 반하는 경우 #		일시정지 (6개월)	인정취소		6개월
2. 세부인정내용의 원재료(심재)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심재)로 만들어 인증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일시정지 (6개월)	인정취소		6개월
3. 제조현장 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심재의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시정지 (6개월)	인정취소		6개월
4. 인증대상이 아닌 일반제품을(심재) 인증대상제품(심재)로 판매하는 경우 #		일시정지 (3개월)	일시정지 (3개월)	인정취소	6개월
5. 난연제등 배합비율 관련한 표준 배합비 적합도 및 준수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요청 (30일)	일시정지 (30일)	인정취소	6개월

※ # 표시의 경우는 표준모델 사용인증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에서결정

※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조치등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조치를 의미함  
 예) 5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요청,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차 일시정지, 30일 이내에 일시정지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차 인정취소